

제2709호
2020. 2. 5.

발행인: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
편집인: 홍보 전 산 과 장 김 건 태
전화: 3396-4955
(http://www.junggu.seoul.kr)

선	기관의장
람	

구 보

● 고 시

제2020-10호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 2
 제2020-11호 : 신당제11구역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정정 고시 4
 제2020-12호 : 도로명주소 부여고시 5

● 자치법규

[입법예고]

제2020-71호 :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

※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.
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<<http://www.junggu.seoul.kr>(행정정보→구보/입법예고) 클릭>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● 구보게재의뢰 TEL.(02)3396-4955 / FAX.(02)3396-9022/3
 ●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,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.
 ※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,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※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람											
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

고 시

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-10호

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4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365호(2016.10.26.)호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-107호(2009.3.19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119호(2014.3.27.) 및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185호(2019.06.07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7-128호(2017.12.29.) 및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-72호(2019. 6. 12.로 사업시행계획 (변경)인가되고 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19-24호(2019.3.13.)로 관리 처분인가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4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제50조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처리하고, 동법 시행규칙 제10조3항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
2020년 2월 5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 (인)

1. 사업의 종류 : 재개발사업
2. 사업의 명칭 : 세운재정비촉진지구 6-3-4구역 재개발사업
3.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중구 인현동2가 151-1번지 일원/ 6,500.03㎡
4. 사업시행자
 - 성명 : 국제자산신탁(주) 대표 이창하
 -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. 20층 (삼성동)
5. 정비사업시행기간 : 사업시행(변경)인가일로부터 54개월
6. 사업시행인가일 : 2017년 12월 29일
7. 주요 변경내용
 - 공동주택 세부용도 변경(아파트 → 아파트·도시형생활주택)
 - 건축계획 변경에 따른 연면적 변경(51,122.69㎡→51,128.67㎡, 증 5.98㎡)

8. 주택의 규모 등 주택건설계획(변경)

대지면적 (㎡)	층수	연면적 (㎡)	건폐율 (%)	용적률 (%)	높이 (m)	건축계획		비고
						전용면적	세대수	
3,377.21	지하9층 지상26층	51,128.67	60.1 7% (저층부)	937.6 0%	89.95	전용 40㎡미만	522 아파트 309 도시형 253	
						전용 40㎡이상 ~ 60㎡미만	92 아파트 52 (임대 40) 도시형 40	
						전용 60㎡이상	-	
						총 계	총 614세대	

9. 관계도서 : 중구청 도심재생과(☎02-3396-5754)에 비치

서울특별시중구고시 제2020-11호

신당제11구역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정정 고시

1.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2015-73(2015.8.31.)호로 고시된 신당 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고시와 관련하여 오기 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.

2020년 1월 31일

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

가. 정정사유 : 관리처분계획인가 중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에서 소재지(지번) 오기 정정

나. 정정내용 : 단순 오기정정

- (정정 전) 신당동 185-779번지 → (정정 후) 신당동 85-779번지

□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명세(변경)

< 정정 전 >

연번	동명	소재지	지목	1필지공부상	구역편입	무상양도	소유자	비고
계				-	202.00	195.00		소로(3-A)
∴	(생 략)							
10	신당동	185-779	대	10.00	10.00	10.00	서울중구	

< 정정 후 >

연번	동명	소재지	지목	1필지공부상	구역편입	무상양도	소유자	비고
계				-	202.00	195.00		소로(3-A)
∴	(생 략)							
10	신당동	85-779	대	10.00	10.00	10.00	서울중구	

서울특별시 중구 고시 제2020-12호

도로명주소 부여고시

우리구 건물 등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 사항이 있어 「도로명주소법」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새로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2월 5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○ 도로명주소

종전주소	도로명주소	도로명주소 고시일	도로명주소 부여기준
		도 로 명 고시일	도 로 명 부여기준
서울특별시 중구 예관동 52-1외 3필	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85	2020. 2. 5.	마른내로의 기초번호로 부여
		2010. 5. 26	옛 지명인 건천동에서 유래

※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토지관리과(☎02-3396-5943)에 문의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(www.junggu.seoul.kr)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(www.juso.go.kr)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

- 도로명주소 고시 후 『도로명주소법』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.
- 공공기관에서 비치·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(소재지)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.

○ 도로명주소 변경 등

-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『도로명주소법』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도로명은 『도로명주소법』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
○ 참고사항

-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, 등·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.

자 치 법 규

[입법예고]

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20 - 71호

「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
2020년 2월 5일

서울특별시 중구청장

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- 개인차량을 줄이고 나눔카(승용차공동이용) 이용 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확보율 70%미만인 주차환경개선지구에 사업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항목 추가
- 서울시 승용차요일제 관련 조례가 폐지되고 마일리지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우리구 승용차요일제 차량에 대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% 할인규정 삭제

2. 주요내용

- 제1조의4(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관리)제2항
 -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나눔카(승용차공동이용) 활성화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항목 추가
- 공영주차장의 요금(별표1, 8의2)
 - 승용차 요일제(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를 쉬게 하는 시민제도) 차량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% 할인

(삭제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참조: 주차관리과장, 주소: 서울특별시 중구 창경궁로17(예관동, 중구청), 문의전화: 3396-6264, FAX: 3396-8873, 메일: rokaff@junggu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(찬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- 붙임 1.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- 2. 신고조문 대비표 1부. 끝.

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4제2항제4호 중 “음자 등”을 “음자”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나눔카(승용차공동이용) 활성화 사업 등

별표 1 “비고”의 제8의2호 중 “승용차 요일제(월화수목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를 쉬게 하는 시민제도)를 이행하기 위해 차량에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 차량과 전통시장에서”를 “전통시장에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1조의4(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·관리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.</p> <p>1. 담장허물기사업</p> <p>2.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</p> <p>3.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·공원지하 주차장건설 사업,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 사업</p> <p>4. 민간주차장설치자금 융자 등</p>	<p>1조의4(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·관리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-----</p> <p>2. -----</p> <p>-----</p> <p>3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4. 민간주차장설치자금 융자</p> <p>5. 나눔키(승용차공용이용) 활성화 사업 등</p>

신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【별표1】</p> <p>- 비 고-</p> <p>1 ~ 8. (생략)</p> <p>8의2. 구청장은 <u>승용차 요일제(월·화·수·목·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승용차를 쉬게 하는 시민제도)</u>를 이행하기 위해 차량에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<u>유희일을 준수한 차량과</u>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급지별 당해 주차요금의 30%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. (단 1급지에 소재한 공영주차장은 그 적용에서 제외한다).</p>	<p>【별표1】</p> <p>- 비 고-</p> <p>1 ~ 8. (현행과 같음)</p> <p>8의2. 구청장은 전통시장에서 구매한 영수증을 제시한 차량이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급지별 당해 주차요금의 30%를 할인해 주어야 한다. (단 1급지에 소재한 공영주차장은 그 적용에서 제외한다).</p>